

예산총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0,629,165	14,718,875
일반회계	415,593,875	12,467,816
특별회계	75,035,290	2,251,059
기타특별회계	75,035,290	2,251,05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524,906	285,747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651,417	19,543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691,000	20,73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8,988	3,570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376,844	161,305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4,383,600	131,508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294,000	38,82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6,524,535	195,736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46,470,000	1,394,1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38,2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